

의안번호	2210118
의 퇴 인	이기현의원
회 답 일	2025. 5. 15.
추계번호	25C253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의3(신고포상금)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31조: 도굴 등의 죄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6조의3(신고포상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26조의3)

- 현행법 제31조는 관련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천연기념물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등 도굴이나 보관,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각각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¹⁾

1)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개정안은 위 도굴 등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포상금 지급 예산 편성이 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및 지급액 등 포상금 지급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그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
-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